

2022 내 사회적주택(아츠스тей 영등포)

입주자 모집 공고(2022.08)

-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주)안테나)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청년 1인주거 임대주택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신청일자 기준으로 하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2022년도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으로 변경(전년도(2021)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22년도 변경 자산·자동차가액 기준 반영)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청년 1인 거주용 공동주택(기숙사)입니다. (공간쉐어, 동거 등 불가)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동차(이륜 등 포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타인명의차량 운용 역시 불가하며, 영업목적의 차량소유·운용의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3개월 내 퇴거 또는 인근 장기미임대주택으로 이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아츠스테이 영등포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4 (영등포동7가) / 총 51호

「아츠스테이 영등포점」은 단순한 주거·생활공간을 넘어 지역과 상생하며 지속가능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거점공간입니다. 입주자는 아츠스테이 영등포를 통해 청년 예술가와 지역민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운 문화 공간 및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모집 구분) 일반 / 특별 /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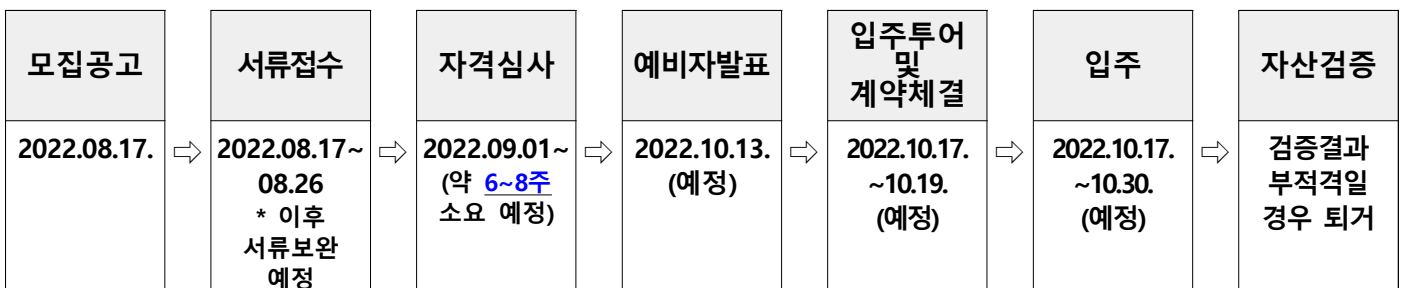
일반공급	· (공급호수) 4호 · (입주자격) 공고문 3.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특별공급	· (공급호수) 6호 ※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격) 공고문 3.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창작·창업 또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이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자 -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문학, 사진, 동영상 등 문화, 예술 분야 - 콘텐츠 크리에이터, 소셜벤처 등 창작·창업 분야 - 소모임, 동아리 운영, 자치 등 커뮤니티 분야 * 첨부된 활동계획서 및 포트폴리오 등 경력·활동증명서 제출 필수 * 자격검증에 통과되더라도, 본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장애인공급	· (공급호수) 0호 · (입주자격) 공고문 3.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 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입주자격)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7. -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에게 공급합니다.

- (1)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2) 한부모 가족
- (3) 차상위계층 가구
- (4) 일반 ①
- (5) 일반 ②

1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자격심사 처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공급대상			최소면적(m ²)			최대면적(m ²)			임대조건(만원)			공급 호수	잔여 세대
유형	타입	층	계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보증 금	최소	최대		
일반 공급	스터디	3~15F	40.42	21.42	19.00	42.38	22.46	19.92	100	34	44	24	3
	테라스	14~15F	30.23	16.02	14.21	34.93	18.51	16.42	100	33	37	3	1
특별 공급	스튜 디오	3~15F	45.12	23.91	21.21	56.31	29.84	26.47	100	38	47	23	6
장애인용		3F				45.85	24.3	21.55	100	39		1	0
합 계												51	10

□ 모집 일반사항

- 입주자격은 신청유형(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모집인원 수는 계약포기·해약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모집호수의 **2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관리비(전기, 수도 등 공과금 및 공통관리비 등)가 별도 부과되며, 부과방식 등 상세내용은 추후 임대차 계약 안내시 개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스터디형과 테라스형**은 학생,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일반공급**으로 모집하며, **스튜디오형**은 창작자의 작업과 주거의 공존에 초점을 맞춘 타입으로 **특별공급대상자**(창작자·창업가·활동가 등)에게 공급합니다.
※ 단, 특별공급 물량(23호)에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합니다.
- 장애인용 1호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배정합니다.
- 본 주택은 비 주택 시설(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원룸형 기숙사로 리모델링한 주택으로, 공용 주방 및 세탁시설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부 호텔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어 일반적인 주택건물에 비해 생활 및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공통사항

-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17.)**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청년 1인 거주용 공동주택(기숙사)입니다. (공간쉐어, 동거 등 불가)
-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동차(이륜차 등 포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타인명의차량의 운용역시 불가합니다. 영업을 위한 차량 소유·운용의 경우 별도 문의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자격요건

■ 청년 중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이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여부와 무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일반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 또는 모(이혼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 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일반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해당 세대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p>※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 준, 단독세대주일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p>

※ 신청자는 자격요건 중 복수의 자격을 갖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대상 및 제출서류 등이 달라 부적격을 이유로 변경이 불가하므로 재신청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수 산정 및 소득·자산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모 중 1인만 가구원에 포함하여 소득 및 자산 심사 대상이 됩니다.

- ①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② 현재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 시 등본 분리 전 가장 최근에 함께 거주한 부 또는 모(주민등록초본 확인)
- ③ 등본 분리 전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한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혹은 신청자가 선택)하는 부 또는 모

■ 소득기준

기 준		1인	2인	3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원)	100%이하	3,212,113	4,844,370	6,418,566
	110%이하	3,533,324	5,328,807	7,060,423
	120%이하	3,854,536	5,813,244	7,702,279

- ※ 일반①의 본인 및 부모 : 3인 100% 이하 소득 확인
- ※ 일반①의 본인 및 부 또는 모 : 2인 110% 이하 소득 확인
- ※ 일반②의 본인 : 1인 120% 이하 소득 확인

■ 자산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일반 ①	일반 ②
소득 (위의 소득기준 참고)	범위	본인 또는 부모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수급자 등 여부 판단	검증 대상 수에 따른 기준	3,854,536원
총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2,500만원	28,800만원
자동차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557만원	3,557만원
주택소유 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자동차	•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기타자산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자동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3.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

서류심사	① 「3.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② 신청 기한 내 증빙 서류 제출 확인 ③ 입주 가능 여부 판단(입주 시점 등)
↓	
추첨	① 모집유형별(일반, 특별) 공급호수만큼 투어대상자 추첨 ② 예비자 : 유형별 공급호수의 2배수 추첨

※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인터뷰 등 대면심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며, 추첨 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접수

■ 공급일정

절차	일정	방법	비고
신청접수	2022.08.17. ~ 08.26. (이후 서류 보완 예정)	우편, 방문접수 中 택일	① 우편접수 : 8월 26일 등기소인까지 ② 방문접수 : 8월 26일 18:00까지
자격심사	2022.09.01.~	-	아츠스테이 홈페이지 (http://www.artxstay.com/)
예비자 발표	2022.10.13.(예정)	개별안내	
입주투어 및 계약체결	2022.10.17. ~ 10.19. (예정)	개별안내	아츠스테이 블로그 (https://blog.naver.com/ant3nadesign)
입주	2022.10.17.~ 10.30. (예정)	개별안내	

■ 접수안내

•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5길 11(성산동 250-40번지) 아츠스테이 성산점 1층

• 서류검토

제출서류를 스캔 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보완할 부분 등에 대해 답변해드립니다.

- 이메일 : ant3na@ant3na.com

• 문의처

- 02-2069-1668 / 카카오톡 채널 '아츠스테이' / ant3na@ant3na.com

- 업무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점심시간 12:30-13:3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5. 입주자격 검증 등

□ 입주자격 검증

- 입주자격은 신청유형(신청유형 세부기준 포함)에 해당하는 자 중 자격요건 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무주택 및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해당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한부모가족, 일반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서명 대상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제출 서류 안내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서류	내 용	발 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 한부모가족, 일반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③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④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본인과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초본 확인 예정)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 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모든 동의란에 체크 	-제공 (불임양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 2. 자격요건별 제출서류 (본인의 자격에 따른 서류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일반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본인과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초본 확인 예정)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자산보유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불임양식)
일반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서명 - 일반 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자산보유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불임양식)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이혼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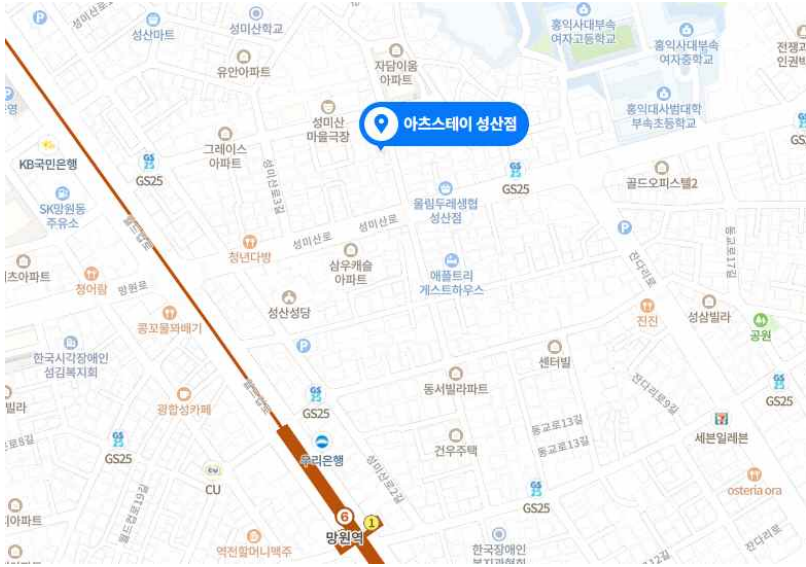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자산 소명은 관련 기준 충족을 요하는 전형(일반①, ②)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자산 조회결과에 따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소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탈락 처리 됩니다.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주택은 소유주와 임대인이 다르므로 시중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출가능 여부는 시중은행에 직접 확인) 임대인(운영기관)에게 대출가능 상품(별도 협약)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입주자격</th> <th>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청년</td> <td>6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기간 중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6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6년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여부 및 가능범위는 해당 주택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관련항목	유의사항
	<p>'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열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호실선정은 다수 지원 시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되므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음,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 변경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호실 교환도 불가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주택별, 계층별 해당 호실별로 인근에 위치한 도로, 유희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주택 주위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년주택 위치는 공고문 약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임대관리(계약, 수납, 재공급, 재계약 등) 업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보증금잔금은 실제 입주일까지 납부완료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공통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p>■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입주민 커뮤니티시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로 진입하기 위한 보행자 부출입구, 보도, 통로 등은 점포 상가 입주자(방문객 포함)와 주택 입주자가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하3층 및 지하2층 일부는 (기계실)주차장, 기계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부대시설의 이용은 공동주택 운영관리업체의 운영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p>■ 입주·관리 등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주택의 모든 공간(주택 전용부와 공용부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 본 주택은 사전 협의한 소동물 1마리에 한해 반려동물 양육이 허용됩니다. 허용되지 않은 반려동물 양육 적발 시 즉시 퇴거 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입주예정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 전화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관련항목	유의사항
	<p>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호실 및 공용공간 등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임대모집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인 50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하며, 원상복구비용(임차인 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에 반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위 주택의 입주 후 임차인이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 인허가 및 실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옹벽, 조경석, 난간의 디테일, 측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표시 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숙박시설로 설계된 건물 특성상 창가 부위는 생활양식 및 관리방식에 따라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 설계·시공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일반 아파트 및 빌라, 원룸 등에 비해 층간 및 벽간소음에 취약한 환경입니다. 이 점 확인 후 신청 바라며, 향후 이로 인한 민원은 당사자간 처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부 공간을 임의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대현관문 앞 E/V홀 전실 등은 사유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택외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는 국회대로, 노들로, 여의로, 올림픽대로, 경인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모여 있는 나들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자동차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여건을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상지로부터 500m 이내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이 위치해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하나, 앰블런스 사이렌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계약체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대상지로부터 2Km 내 이마트, 홈플러스, 빅마켓,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롯데, 신세계), 타임스퀘어 등 대형 상권이 위치해 있고, 영등포 역을 비롯하여 지하철 1, 2, 5, 9호선 역이 위치해있으며, 올림픽대로,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등 생활 및 교통 편의성이 높습니다. • 주택내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보관소는 별관 1층에 설치되고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및 주차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인택배 설비의 설치 위치는 설치형태,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리플릿 등의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및 평면도 등 [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 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 색채계획, 주택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쇄 및 편집과정에 일부 오류, 오기,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본 사업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도로 및 철도 소음, 지장물 등 각종 환경저해 요인 및 주변 여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단지는 주차장을 외부개방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안테나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5길 11, 아츠스테이 성산점 1층) *주차불가



문의사항

- 전화 : 02-2069-1668
- 카카오톡채널 : '아츠스테이'
- 이메일 : ant3na@ant3na.com

2022. 08. 17.

(주)안테나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 소득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 (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사업소득)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구분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일반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